



숙박업 위험성평가

1. 사업장 개요

제주도에 위치한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수는 2개의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약 250명이다. 사업 특성상 현재까지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꾸준한 아차사고가 있었음에도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다.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꾸준한 아차사고가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인 교육과 사업주와의 면담으로 사업장 임직원들에게 전파한 결과 모두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이다.

2. 재해 현황

최근 3년간 총 18건의 아차사고가 있었다. 로비, 프론트에서 1건, 세탁작업에서 2건, 객실관리에서 3건, 식음료 조리작업에서 5건, 시설관리에서 4건, 청소·미화작업에서 3건이다.

이중 세탁작업의 아차사고는 대형세탁기 가동 중 문개방으로 협착, 객실관리의 아차사고는 회전의자 위에 올라 창문청소 중 추락, 시설관리의 아차사고는 휴대용 연삭기 날 교체 시 전원 미차단으로 찰과상 등 대부분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그로인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시급한 실정이다.

3. 안전보건상 위험정보

- 가. 입사·퇴사가 잦지는 않지만 꾸준하여 1년 미만의 미숙련자들이 있다.
- 나. 사업 특성상 여성근로자들이 상당수 있으며, 일부는 고령 근로자들로 작업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.
- 다. 2개 협력업체의 업무분야는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작업에서는 업무경계가 모호하여 작업지휘 혼선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다.
- 라. 2개 협력업체가 하나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작업순서의 혼선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.
- 마. 일부 특정작업시 협소한 공간과 불충분한 조도로 인하여 균골격계질환 발생위험 및 작업시야 미확보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다.

바. 작업에 따라 2m 이상의 고소작업이 필요하나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추락 등 재해 위험이 있다.

- 사. 일부 근로자들은 빠른 작업진행을 위하여 스스로 안전여부를 판단하고, 사소하다 생각하는 안전조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.
- 아. 사업 특성상 수많은 이용객이 들고 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다.
- 자. 기계·기구 보유현황 : 이동대차(짐수레) 10대, 대형 세탁기 4대, 식기세척기 6대, 대형냉장고 20대 및 냉동고, 온장고 각 10대, 가스오븐 5대, 제빙기 10대, 공업용 보일러 3대, 등근톱 1대, 탁상용연삭기, 탁상용드릴 각 1대, 바닥청소기계 5대, 비상발전기 2대 등.

4. 주요공정

- 가. 접객업무(프론트, 로비)
- 나. 세탁업무
- 다. 객실관리업무
- 라. 식음료, 조리업무
- 마. 시설관리업무
- 바. 청소·미화업무

5. 위험성평가

- 위험요인 : 중량물 취급 부주의에 의한 균골격계질환 발생 위험
- 개선대책 :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부착 및 안전교육 실시
- 위험도 변화 : 12 → 6



<개선 전>



<개선 후>

- 위험요인 : 직립자세로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골격계질환
발생위험
- 개선대책 : 피로방지용 매트 설치
- 위험도 변화 : 12 → 6



〈개선 전〉
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이동대차(짐수레) 바퀴 파손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
- 개선대책 : 파손된 바퀴 교체
- 위험도 변화 : 12 → 4



〈개선 전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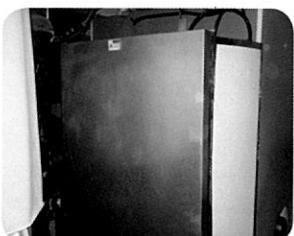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대형세탁기 뒷면 동력전달부 노출로 감김, 협착 위험
- 개선대책 : 위험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설치
- 위험도 변화 : 16 → 6



〈개선 전〉
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락스, 세제 등을 일반 음료병에 보관하고 있어 부주의 시 음용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위험
- 개선대책 : 전용 용기 사용 및 위험표지 부착
- 위험도 변화 : 18 → 6



〈개선 전〉
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대형세탁기 가동 중 문 개방으로 감김, 협착위험
- 개선대책 : 세탁조 정지 확인 후 문 개방, 가동 중 문 개방 안 되도록 인터록 설치
- 위험도 변화 : 12 → 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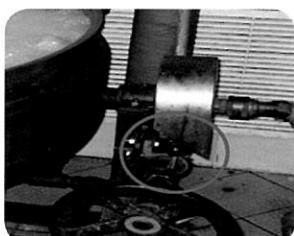


〈개선 전〉
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스팀솔 기울임 정지장치 불량으로 부주의 시 고온의 식음료에 화상위험
- 개선대책 : 기울임 정지장치 재설치
- 위험도 변화 : 18 → 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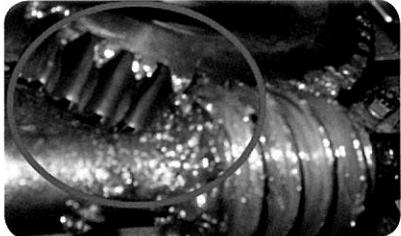


〈개선 전〉
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스텀솔 기울임 조절장치 기어부 톱니 파손으로 고온의 식음료에 화상위험
- 개선대책 : 해당 불량부품 교체
- 위험도 변화 : 18 → 6



〈개선 전〉

- 위험요인 : 자동화산소화기 내압불량으로 화재발생시 초기 진압 불가로 피해확대 우려
- 개선대책 : 적정 내압의 자동화산소화기로 교체
- 위험도 변화 : 12 → 6



〈개선 전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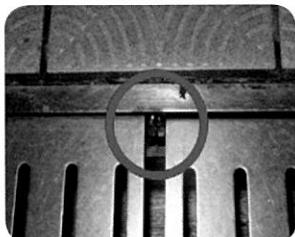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식음료 조리장 바닥 배수로 덮개 이동방지조치 미실시로 발빠짐, 발걸림 등에 의한 전도위험
- 개선대책 : 이동방지조치 실시
- 위험도 변화 : 12 → 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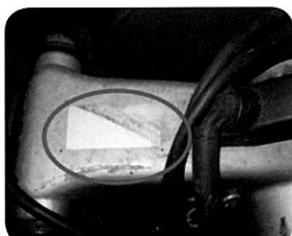


〈개선 전〉
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고속절단기 명판제거로 적정 rpm 미확인에 의한 적정 절단휠 장착 불가
- 개선대책 : 측정으로 적정 rpm 확인(3750rpm) 및 적정 절단휠(3400rpm) 장착
- 위험도 변화 : 10 → 6



〈개선 전〉
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냉동기 측면덮개 개방으로 화상위험
- 개선대책 : 냉동기 측면덮개 개방 금지
- 위험도 변화 : 10 → 4



〈개선 전〉
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발전기 가동 시 100dB이상의 소음발생으로 보호구 미착용 시 소음성난청 발생위험
- 개선대책 : 귀덮개 등 적정보호구 비치 및 해당 표지판 부착
- 위험도 변화 : 12 → 4



〈개선 전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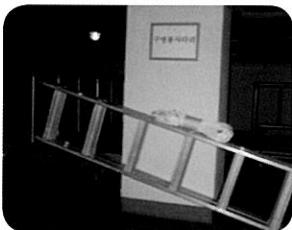


〈개선 후〉

- 위험요인 : 폐수처리장 폐수조에서의 탈출장비 미비치로 중대재해 발생위험
- 개선대책 : 구명용 로프, 사다리 등 비치
- 위험도 변화 : 12 → 6



〈개선 전〉



〈개선 후〉

6. 평가결과

이번 위험성평가로 124건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며, 이중 104건을 개선(개선율 83.8%)하였다. 이곳 사업장의 임직원들은 124건의 위험요인이 도출된 것을 보고 지금까지의 헤이했던 안전의식을 재고하게 되었으며, 적극적인 개선의지로 평균 위험도는 평가 초기에 10.12에서 평가 후 4.69로 상당히 낮출 수 있었다.

이는 흔히 위험이 없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숙박업이 결코 위험 예외구역이 아님을 알게 한 사례라 할 수 있다. ☺

KISA 위험성평가 위험도 계산방법

(■ 위험도 = 빈도 + 가능성 + 중대성)

- 위험상태가 발생할 빈도

| 빈도 | 평가점 | 내 용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 | 4점 | 발생가능성 매우 높음 또는 최근 3년간 중대재해 1건 이상 발생 |
| 중 | 2점 | 발생가능성 있음 또는 최근 3년간 경미재해 1건 이상 발생 |
| 하 | 1점 | 발생가능성 낮음 또는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없음 |

- 위험의 중대성

| 중대성 | 평가점 | 내 용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치명상 | 10점 | 사망이나 영구적 노동 불능에 이어질 상해 |
| 중상 | 6점 | 휴업재해(완치 가능한 재해) |
| 경상 | 3점 | 불 휴업재해 |
| 가벼운 경상 | 1점 | 치료 후 다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상해 |

- 위험요소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

| 상해기능성 | 평가점 | 내 용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치명 확실함 | 6점 | 안전대책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표시나 표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상태 |
| 가능성 많음 | 4점 | 표시나 표식이 되어 있지만 방호장치, 보호카버, 기타 안전장치가 없는 위험한 상태 |
| 가능성 있음 | 2점 | 방호장치, 보호카버, 기타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위험영역에 근접시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전상태 |
| 가능성 거의 없음 | 1점 | 방호장치, 보호카버, 기타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며 위험 영역에 근접시 곤란한 상태가 발생 |

■ 위험등급 평가표

| 위험등급 | 위험포인트 | 위험내용 | 위험감소조치 추진방법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 | 12~20 | 안전보건상 중대한 문제가 있음 | 즉시 중지 또는 개선할 위험감소 조치를 실시 |
| 3 | 8~11 | 안전보건상 문제가 있음 | 감소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 |
| 2 | 5~7 | 안전보건상 다소 문제가 있음 | 감소조치를 계획적으로 실시 |
| 1 | 3~4 | 안전보건상 문제가 거의 없음 |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감소조치를 실시 |